

『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정비

3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, 해촉으로 인한 추가 위촉 시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규정함 (안 제3조)
-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자문을 받도록 개선하여 총괄부서에서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별도의 자문료 지급근거 마련 및 고문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 그 다음날에 지급하던 것을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고문 변호사의 직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,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에서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 2조와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음.
- 안 제 4조에 고문변호사 자문요청 시 소송 총괄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자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6조에 별도 자문료 지급 근거 및 고문료 지급일을 변경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구미시 고문 변호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, 자문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